

의안번호	2206534
의 퇴 인	김선민 의원
회 답 일	2024.12.30.
추계번호	24C5722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85억 4,000만원(연평균 57억 8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위원회 및 사무국의 설치 (안 제3조·제14조)	5,495	5,598	5,707	5,815	5,925	28,540	5,708

주: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준용하되, 사무국 인원 규모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50%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아동학대 사망사건조사·분석 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14조(사무국의 설치)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 (제2항)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둠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의 설치)	○	○ 최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14조(사무국의 설치)	○	○ 최근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준용하되, 사무국 인원 규모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50% 수준으로 가정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및 사무국이 설치·운영되는 점에서 유사
 -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¹⁾에 따라 2018년부터 설치·운영되어 2022년 6월 종료됨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는 2개 사건(가습기살균제사건,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조사 업무를 토대로 조직이 구성된 점을 준용하여 제정안에 따른 사무국 인원 규모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의 50% 수준인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기본경비, 임차료, 여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로 구성
 - (인건비) 제정안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 상임위원 및 신규 임용 공무원 수에 각 직급별 1인당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
 - (운영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사업 인건비 대비 운영비 예산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가. 인건비

- 유사사례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준용하여 추계대상 인원 수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과 사무국의 신규 임용 공무원 42명으로 가정
 -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에 해당²⁾하므로 위원회 인건비 지급 인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총 2명
 - 사무국의 신규 임용 공무원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의 50% 수준인 42명($120\text{명} \times 0.5 \times 0.7$)으로 가정
 - － 본 추계에서는 사무국 직원 수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처 직원(120명)³⁾의 50%인 60명으로 하고, 이 중 파견 공무원과 신규 임용 공무원 수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정원에 준용하여 각각 18명(30%)과 42명(70%)으로 가정

2) 안 제11조(위원의 겸직 및 정치활동금지) 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억 8,800만원으로 추계

- 2021년 예산 기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사무처의 직급별 1인당 인건비를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표 2] 위원회 및 사무국 인건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건비	2,135	2,175	2,217	2,259	2,302	11,088	2,2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운영비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율을 준용하여 산출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추계기간 동안 인건비에 157.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건비 대비 운영비 예산 비율)를 적용하여 산출

□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4억 5,200만원으로 추계

[표 3]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운영비	3,360	3,423	3,490	3,556	3,623	17,452	3,4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85억 4,000만원(연평균 57억 8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위원회 및 사무국의 설치 (안 제3조·제14조)	5,495	5,598	5,707	5,815	5,925	28,540	5,708

주: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준용하되, 사무국 인원 규모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50%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위원회 상임위원 수, 사무국 규모(배치인력 수, 인건비, 운영비 등)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운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운	02-6788-4742	sionkang@nabo.go.kr